

변경 대비표

1. 펀드명

변경전) 하나UBS KRX300 1.5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후) 하나UBS 중기증권투자신탁[채권]

2. 주요 변경내용

- 1)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2) 모투자신탁 추가
- 3) 펀드유형 변경 (주식파생형 → 채권형)
- 4) 보수 및 판매수수료 변경
- 5)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 6) 펀드명 변경
- 7) 펀드유형 변경으로 인한 환매주기 및 Late trading 기준시간 변경
- 8) 비교지수 변경
- 9) 운용역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8년 10월 26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조 (용어의 정의)	<신설>	<u>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u>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p>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u>하나UBS KRX300 1.5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 [주식-파생형]</u>"으로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p>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u>하나UBS 중기증권투자신탁[채권]</u>"으로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2. 증권(<u>채권형</u>)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u>6. 모자형(자투자신탁)</u>

	<p>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신설></p> <p><신설></p>	<p><u><삭제></u></p> <p><u>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하나UBS 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u></p> <p><u>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내지 제4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제 16 조(투자 목적)</p>	<p>이 투자신탁은 <u>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RX300지수 일일 등락률의 1.5배 수준 수익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이 투자신탁은 <u>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 17 조(투자 대상자산 등)</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p> <p>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u>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u></p> <p>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p> <p>3.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p> <p>4.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p> <p>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p> <p>6.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p> <p>7.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p> <p>8. 증권의 차입</p> <p>9.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p>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p>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p>

	<p>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이하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6.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7.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p>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3조제4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u> 2. <u>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에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u>
<p>제 19 조(운용 및 투자제한)</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p>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p>	<p><이하 삭제></p>
--	--	----------------------

	<p>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p>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p>	
--	--	--

	<p>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6.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p>	
--	--	--

	<p>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7.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p>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p>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4호</p>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삭제></p>

	<p>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및 라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③제2조제4호, 제18조제4호, 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가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삭제></p> <p><삭제></p>
<p>제 25 조(판매 가격)</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u>14시 경과</u>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으로 한다.</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u>17시 경과</u>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으로 한다.</p>

<p><u>제 25 조의 2</u> <u>(모투자신탁</u> <u>수익증권의</u> <u>매수)</u></p>	<p><신설></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p>
<p><u>제 26 조의 2</u> <u>(모투자신탁</u> <u>수익증권의</u> <u>환매청구)</u></p>	<p><신설></p>	<p>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 27 조(환매 가격 및 환매방법)</p>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4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4시</p>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p>

	<p><u>경과 후에</u>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u>경과 후에</u>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u>동 의 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 의 를 얻</u> 은 경우에는 <u>모투자신탁의</u> 투자신탁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 28 조(환매 연기)</p>	<p>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p> <p>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u>제2영업일(14</u></p>	<p>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u>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u>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p> <p>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u>전영업일(17시 경과</u></p>

	<p>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2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제 30 조(기준 가격 산정 및 공고)</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p>
<p>제 35 조(상환금 등의 지급)</p>	<p>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 37 조(수익자총회)</p>	<p>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u>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u> 결의할 수 있다.</p> <p><신설></p>	<p>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u>법령,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u> 결의할 수 있다.</p> <p>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제 39 조(보수)</p>	<p>제3항 [종류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p>	<p>제3항 [종류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8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p>

	<p>의 5.0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종류A-E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종류C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종류C-E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종류C-F 수익증권]</p>	<p>의 <u>0.80</u></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u>0.05</u></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0.01</u></p> <p>[종류A-E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u>0.80</u></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0.40</u></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u>0.05</u></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0.01</u></p> <p>[종류C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u>0.80</u></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2.50</u></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u>0.05</u></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0.01</u></p> <p>[종류C-E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u>0.80</u></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1.25</u></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u>0.05</u></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0.01</u></p> <p>[종류C-F 수익증권]</p>
--	--	--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 의 0.3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 의 0.30</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8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 의 0.1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 의 0.0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p>
<p>[종류W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 의 0.0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 의 0.30</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종류W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8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 의 0.0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 의 0.0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p>
<p>[종류AG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 의 3.25</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 의 0.30</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종류AG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8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 의 0.5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 의 0.0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p>
<p>[종류CG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 의 6.5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 의 0.30</p>	<p>[종류CG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8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 의 1.2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 의 0.0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종류S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0</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0.01</u></p> <p>[종류S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u>0.80</u></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0.35</u></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u>0.05</u></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0.01</u></p>
<p>제 40 조(판매 수수료)</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u>1.00% 이내</u></p> <p>2. 종류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u>0.50% 이내</u></p> <p>3. 종류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u>0.50% 이내</u></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종류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u>0.30% 이내</u></p> <p>2. 종류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u>0.15% 이내</u></p> <p>3. 종류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u>0.15% 이내</u></p>
<p>제 43 조(신탁 계약의 변경)</p>	<p>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u>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u>)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p>

		지 아니하다.
제 45 조(집합 투자기구의 해지)	<p>⑥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다.</p>	<삭제>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KRX300 1.5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하나UBS 중기증권투자신탁[채권]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5등급(낮은 위험)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RX300지수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익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판매수수료(선취) A : 납입금액의 <u>1.00%</u> 이내 A-E : 납입금액의 <u>0.50%</u> 이내 보수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A</th> <th>A-E</th> <th>C</th> <th>C-E</th> </tr> </thead> <tbody> <tr> <td>운용</td> <td><u>0.300</u></td> <td><u>0.300</u></td> <td><u>0.300</u></td> <td><u>0.300</u></td> </tr> <tr> <td>판매</td> <td><u>0.700</u></td> <td><u>0.350</u></td> <td><u>1.000</u></td> <td><u>0.500</u></td> </tr> <tr> <td>신탁 업자</td> <td><u>0.030</u></td> <td><u>0.030</u></td> <td><u>0.030</u></td> <td><u>0.030</u></td> </tr> <tr> <td>일반 사무</td> <td><u>0.015</u></td> <td><u>0.015</u></td> <td><u>0.015</u></td> <td><u>0.015</u></td> </tr> <tr> <td>기타 비용</td> <td>실비</td> <td>실비</td> <td>실비</td> <td>실비</td> </tr> <tr> <td>총보 수비 용</td> <td><u>1.045</u></td> <td><u>0.695</u></td> <td><u>1.345</u></td> <td><u>0.845</u></td> </tr> </tbody> </table>	종류	A	A-E	C	C-E	운용	<u>0.300</u>	<u>0.300</u>	<u>0.300</u>	<u>0.300</u>	판매	<u>0.700</u>	<u>0.350</u>	<u>1.000</u>	<u>0.500</u>	신탁 업자	<u>0.030</u>	<u>0.030</u>	<u>0.030</u>	<u>0.030</u>	일반 사무	<u>0.015</u>	<u>0.015</u>	<u>0.015</u>	<u>0.015</u>	기타 비용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보 수비 용	<u>1.045</u>	<u>0.695</u>	<u>1.345</u>	<u>0.845</u>	판매수수료(선취) A : 납입금액의 <u>0.30%</u> 이내 A-E : 납입금액의 <u>0.15%</u> 이내 보수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A</th> <th>A-E</th> <th>C</th> <th>C-E</th> </tr> </thead> <tbody> <tr> <td>운용</td> <td><u>0.080</u></td> <td><u>0.080</u></td> <td><u>0.080</u></td> <td><u>0.080</u></td> </tr> <tr> <td>판매</td> <td><u>0.080</u></td> <td><u>0.040</u></td> <td><u>0.250</u></td> <td><u>0.125</u></td> </tr> <tr> <td>신탁 업자</td> <td><u>0.005</u></td> <td><u>0.005</u></td> <td><u>0.005</u></td> <td><u>0.005</u></td> </tr> <tr> <td>일반 사무</td> <td><u>0.001</u></td> <td><u>0.001</u></td> <td><u>0.001</u></td> <td><u>0.001</u></td> </tr> <tr> <td>기타 비용</td> <td>실비</td> <td>실비</td> <td>실비</td> <td>실비</td> </tr> <tr> <td>총보 수비 용</td> <td><u>0.166</u></td> <td><u>0.126</u></td> <td><u>0.336</u></td> <td><u>0.211</u></td> </tr> </tbody> </table>	종류	A	A-E	C	C-E	운용	<u>0.080</u>	<u>0.080</u>	<u>0.080</u>	<u>0.080</u>	판매	<u>0.080</u>	<u>0.040</u>	<u>0.250</u>	<u>0.125</u>	신탁 업자	<u>0.005</u>	<u>0.005</u>	<u>0.005</u>	<u>0.005</u>	일반 사무	<u>0.001</u>	<u>0.001</u>	<u>0.001</u>	<u>0.001</u>	기타 비용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보 수비 용	<u>0.166</u>	<u>0.126</u>	<u>0.336</u>	<u>0.211</u>
종류	A	A-E	C	C-E																																																																				
운용	<u>0.300</u>	<u>0.300</u>	<u>0.300</u>	<u>0.300</u>																																																																				
판매	<u>0.700</u>	<u>0.350</u>	<u>1.000</u>	<u>0.500</u>																																																																				
신탁 업자	<u>0.030</u>	<u>0.030</u>	<u>0.030</u>	<u>0.030</u>																																																																				
일반 사무	<u>0.015</u>	<u>0.015</u>	<u>0.015</u>	<u>0.015</u>																																																																				
기타 비용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보 수비 용	<u>1.045</u>	<u>0.695</u>	<u>1.345</u>	<u>0.845</u>																																																																				
종류	A	A-E	C	C-E																																																																				
운용	<u>0.080</u>	<u>0.080</u>	<u>0.080</u>	<u>0.080</u>																																																																				
판매	<u>0.080</u>	<u>0.040</u>	<u>0.250</u>	<u>0.125</u>																																																																				
신탁 업자	<u>0.005</u>	<u>0.005</u>	<u>0.005</u>	<u>0.005</u>																																																																				
일반 사무	<u>0.001</u>	<u>0.001</u>	<u>0.001</u>	<u>0.001</u>																																																																				
기타 비용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보 수비 용	<u>0.166</u>	<u>0.126</u>	<u>0.336</u>	<u>0.211</u>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매입방법 · <u>14시 이전</u> : 제2영업일 기준가 매입 · <u>14시 경과 후</u> :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매입방법 · <u>17시 이전</u> : 제2영업일 기준가 매입 · <u>17시 경과 후</u> :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방법 · 14시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 14시 경과 후 : 제3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환매방법 · 17시 이전 : 제3영업일 기준가 제3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 후 : 제4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KRX300지수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익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u>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u>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table border="1" data-bbox="884 891 1372 1133"> <thead> <tr> <th>모투자신탁</th> <th>투자목적</th> </tr> </thead> <tbody> <tr> <td><u>하나 UBS 파워 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u></td> <td><u>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u></td> </tr> </tbody> </table> (2) 투자대상 <table border="1" data-bbox="884 1279 1372 1525">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u>하나 UBS 파워증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u></td> <td><u>70% 이상</u></td> </tr> <tr> <td>유동성자산</td> <td>10% 이하</td> </tr> </tbody> </table>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table border="1" data-bbox="884 1630 1372 1827">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u>채권</u></td> <td><u>60% 이상</u></td> </tr> <tr> <td><u>어음</u></td> <td><u>40% 이하</u></td> </tr> <tr> <td><u>자산유동화증권</u></td> <td><u>40% 이하</u></td> </tr> </tbody> </table>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u>하나 UBS 파워 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u>	<u>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u>	투자대상	투자비율	<u>하나 UBS 파워증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u>	<u>70% 이상</u>	유동성자산	10% 이하	투자대상	투자비율	<u>채권</u>	<u>60% 이상</u>	<u>어음</u>	<u>40% 이하</u>	<u>자산유동화증권</u>	<u>40% 이하</u>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u>하나 UBS 파워 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u>	<u>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u>																			
투자대상	투자비율																			
<u>하나 UBS 파워증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u>	<u>70% 이상</u>																			
유동성자산	10% 이하																			
투자대상	투자비율																			
<u>채권</u>	<u>60% 이상</u>																			
<u>어음</u>	<u>40% 이하</u>																			
<u>자산유동화증권</u>	<u>40% 이하</u>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투자전략 <별첨 1 참조 >	2. 투자전략 <별첨 1 참조 >																		
II. 집합투자	3. 운용전문인력	3. 운용전문인력																		

기구의 투자 정보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상율 [부책임용전문인력] 김태수	[책임운용전문인력] 신봉관
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 정보	<p>[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p> <p>1. 주요 투자위험</p> <p>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u>상장주식, 파생상품</u>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레버리지(Leverage) 위험 (생략)</p> <p>투자원금 전부 손실 가능성 (생략)</p> <p>(지수)추적오차(Tracking Error) 위험 (생략)</p> <p>코스닥 종목 투자위험 (생략)</p> <p><추가></p> <p><추가></p>	<p>[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p> <p>1. 주요 투자위험</p> <p>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u>채권</u>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u>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u></p> <p>이자율 변동위험 <u>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u></p>

	<p><추가></p>	<p><u>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u></p> <p>파생상품 투자위험 <u>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 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u></p>
<p>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 정보</p>	<p>[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u>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 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이익을 추구하므로, 6등급 중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u></p>	<p>[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u>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이익을 추구하므로, 6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u></p>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KRX300 1.5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하나UBS 중기증권투자신탁(채권)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5등급(낮은 위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p>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p>8.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 위험 노출도를 순자산총액의 1.5배 수준으로 유지하므로 KRX300 지수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익률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투자기간 전체에 대해 단순 누적하여 1.5배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수 하락시 일일하락률 1.5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9.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간단위로만 KRX3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신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누적적으로는 KRX300 지수 누적수익률의 1.5배 수준의 성과를 실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 투자신탁과 KRX300지수의 누적수익률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10.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펀드투자 판매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p> <p>14.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삭제></p> <p><삭제></p>
<p>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p>	<p>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KRX300 1.5 배 레버리지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p>	<p>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중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p>
<p>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p>	<p>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운용자산별 종류 : <u>증권(주식파생형)</u> 마. 특수형태 : <추가></p>	<p>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운용자산별 종류 : <u>증권(채권형)</u> 마. 특수형태 :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 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p>
<p>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p>	<p>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KRX300 1.5 배 레버리지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p>	<p>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중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p>
<p>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p>	<p>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p>	<p>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8 년 10 월 26 일 1)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2) 모투자신탁 추가 3) 펀드유형 변경 (주식파생형 → 채권형) 4) 보수 및 판매수수료 변경 5)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6) 펀드명 변경</p>

		<p>7) 펀드유형 변경으로 인한 환매주기 및 Late trading 기준시간 변경</p> <p>8) 비교지수 변경</p> <p>9) 운용역 변경</p>													
<p>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p>	<p>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가. 책임운용인력 김상율</p> <p>나. 부책임운용인력 김태수</p> <p>다.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p>	<p>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가. 책임운용인력 신봉관</p> <p><삭제></p> <p>나.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p>													
<p>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p>	<p>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p>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p> <p>다. <신설></p>	<p>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p>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p> <p>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887 1352 1362 1554">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하나 UBS 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td> <td>70% 이상</td> </tr> </tbody> </table>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887 1697 1362 2002"> <thead> <tr> <th>모투자신탁명</th> <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 </tr> </thead> <tbody> <tr> <td>하나 UBS 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td> <td>주요 투자 대상</td> <td>채권 60% 이상, 여음 40% 이하</td> </tr> <tr> <td></td> <td>투자 목적</td> <td>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70% 이상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	주요 투자 대상	채권 60% 이상, 여음 40% 이하		투자 목적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70% 이상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	주요 투자 대상	채권 60% 이상, 여음 40% 이하													
	투자 목적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p><u>자신탁 [채권]</u></p> <p><u>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u></p> <p><u>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u></p> <p>- <u>투자신탁의 대부분을 국공채, 신용등급 AA-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u></p> <p>- <u>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u></p>
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p>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KRX300 지수 일일등락률의 1.5 배 수익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u>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별첨 2 참조></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별첨 2 참조></p>
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p>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p> <p><별첨 3 참조></p>	<p>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p> <p><별첨 3 참조></p>
제 2 부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 <u>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u></p>

	<p>가. 일반위험 <별첨 4 참조></p> <p>나. 특수위험 <별첨 4 참조></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u>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u></p>	<p><u>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u></p> <p>가. 일반위험 <별첨 4 참조></p> <p>나. 특수위험 <별첨 4 참조></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u>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u></p>
<p>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p> <p>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1) 오후 <u>2시</u>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p> <p>2) 오후 <u>2시</u>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p> <p><추가></p> <p>나. 환매</p>	<p>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p> <p>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1) 오후 <u>5시</u>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p> <p>2) 오후 <u>5시</u>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p> <p><u>※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u></p> <p>나. 환매</p>

<p>(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1) <u>오후 2 시</u>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 2 영업일</u>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p> <p>2) <u>오후 2 시</u>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 3 영업일</u>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p> <p><추가></p> <p>(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u>14 시[오후 2 시]</u>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u>14 시[오후 2 시]</u>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p> <p>(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p>	<p>(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1) <u>오후 5 시</u>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3 영업일</u>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3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p> <p>2) <u>오후 5 시</u>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 4 영업일</u>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p> <p>※ <u>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u>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u> <u>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u> <u>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u> <u>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u> <u>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u> <u>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u> <u>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u> <u>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u> <u>다.</u></p> <p>(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u>17 시[오후 5 시]</u>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u>17 시[오후 5 시]</u>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p> <p>(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p>
--	---

	<p>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u>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u>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생략)</p> <p>7)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4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u>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u>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p> <p>7)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p> <p>종류 A : 납입금액의 <u>1.00%</u> 이내</p> <p>종류 A-E : 납입금액의 <u>0.50%</u> 이내</p> <p>종류 AG : 납입금액의 <u>0.50%</u> 이내</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별첨 5 참조></p> <p><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투자기간</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p> <p>종류 A : 납입금액의 <u>0.30%</u> 이내</p> <p>종류 A-E : 납입금액의 <u>0.15%</u> 이내</p> <p>종류 AG : 납입금액의 <u>0.15%</u> 이내</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별첨 5 참조></p> <p><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투자기간</p>

	<p>별 예시> <별첨 5 참조></p>	<p>별 예시> <별첨 5 참조></p>
<p>제 4 부 집 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p>	<p>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p>	<p>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p>
<p>제 5 부 기 타 투자자 보호를 위 해 필요한 사항</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 습니다.</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또는 <u>및 모투자신탁의 수익 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 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 항에 한하여</u>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제 5 부 기 타 투자자 보호를 위 해 필요한 사항</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 업자가 운용하는 “하나 UBS 파워증기채 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 으로 변경됩니다.</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삭제></p>
<p>제 5 부 기 타 투자자 보호를 위 해 필요한 사항</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 (<u>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u>)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p>

<p>(3) 자산보관·관리보고서</p> <p>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p> <p>나. 수시공시</p> <p>(2) 수시공시</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생략)</p>	<p>(3) 자산보관·관리보고서</p> <p>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p> <p>나. 수시공시</p> <p>(2) 수시공시</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생략, 현행과 동일)</p>
---	---

별첨 1

<변경 전>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KRX300지수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익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초과수익이 기대되는 경우, 투자신탁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초과수익 전략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 기본 투자 전략

1) 주식에의 투자 - KRX300 지수 추종 포트폴리오 등

- KRX300 지수 종목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KRX3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
-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신탁 순자산의 일정 부분을 현금자산 및 ETF(KRX300 등 인덱스 추종) 등에 투자
- 거래소의 지수변경 등 시장 상황 변화 시 주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을 통하여 유연하게 대응

2)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 - KRX300지수 선물 등

- KRX300 지수선물 등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KRX300 지수 일일등락률 1.5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
- 투자신탁의 주식에 대한 투자노출도를 순자산의 150% 수준으로 유지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투자

(2) 초과수익 전략

- 대형주/중소형주 비중확대 : 대형주(또는 중소형주)의 강세 국면을 포착하여 비중 조절
- 스타일 교체 : 비슷한 특성의 종목들을 그룹화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스타일군의 종목 편입
- 편입비 조절 :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따른 주식 비중 조절
- Event-driven : 기업의 이벤트 발생 시 적정가치를 분석하여 종목 매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보다 자세한 투자전략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 KRX300지수 일일등락률 * 150%

KRX300 지수

한국거래소에서 2018년 02월 05일 발표한 지수로서, 305개 종목(코스피 237개 종목 + 코스닥 68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 (단, 2018년 6월 정기변경부터는 300개 종목으로 조정될 예정)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KRX300 지수의 1.5배 수준 성과를 추종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하여 KRX300지수 일일등락률 * 150%를 비교지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변경 후>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수익을 추구합니다.

■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u>하나 UBS 파워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 권]</u>	<p>-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신용등급 AA-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u>집합투자기구</u>입니다.</p> <p>-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p>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보다 자세한 투자전략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펀드 투자비중**

투자 대상	투자 비율
<u>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u>	<u>70% 이상</u>

※ **비교지수**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주1) 이 비교지수는 2018년 10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듀레이션 3.5 +/- 0.5년)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별첨 2

<변경 전>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60% 이상	- 주식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을 포함한다) -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관련 파생상품
②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③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⑤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이하로 한다.
⑥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⑦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	증권의 차입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의한 증권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⑨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① ~ ③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① ~ ③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p>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계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p>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때,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p>	
<p>집합투자증</p>	<p>-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다음 각 목의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운</p>	<p>최초설정일</p>

<p>권에의 투자</p>	<p>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p> <p>마.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로부터 1개월간 (단, 가목만 해당)</p>
<p>파생상품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p>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p>
<p>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p>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p>	

<변경 후>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u>하나 UBS 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u>	<u>70% 이상</u>	-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금리 변동성을 활용한 장단기 Target 듀레이션 설정으로 초과수익 추구 - 펀더멘탈, 채권수급, 기타 신용 스프레드 분석을 통해 적극적 Sector 배분 전략 실행
<u>유동성자산</u>	<u>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 요한 경우에는 30% 이 내)</u>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 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u>기타</u>	<u>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u>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	----	------

단기대출 및 환매 조 건부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 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 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 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
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
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
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
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
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u>1.채권</u>	<u>60%이상</u>	<u>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u>
<u>2.어음</u>	<u>40%이하</u>	<u>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자산유동화어음(ABCP)포함한다)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u>
<u>3.자산유동화증권</u>	<u>40%이하</u>	<u>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
<u>4.금리스왑거래</u>	<u>채권 또는 채무 증서 총액의 100%이하</u>	<u>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u>
<u>5.집합투자증권</u>	<u>40%이하</u>	<u>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u>
<u>6.채권관련장내 파생상품</u>	<u>위험평가액 10% 이하</u>	<u>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u>
<u>7.환매조건부 매수 또는 매도</u>	<u>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u>	
<u>8.증권의 대여</u>	<u>증권 총액의 50%이하</u>	
<u>9.증권의 차입</u>	<u>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증권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u>	
<u>10.기타</u>	<u>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u>	

	<u>거래</u>
<u>유동성자산</u>	<u>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가. <u>단기대출</u>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u>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u>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u>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u>	
동일종목 투자	<u>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u> 가. <u>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u>	<u>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u>

	<p><u>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u></p>	
<p>파생상품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 <u>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 <u>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 	<p><u>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u> - <u>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u> 	

별첨 3

<변경 전>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KRX300지수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익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초과수익이 기대되는 경우, 투자신탁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초과수익 전략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 기본 투자 전략

1) 주식에의 투자 - KRX300 지수 추종 포트폴리오 등

- KRX300 지수 종목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KRX3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
-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신탁 순자산의 일정 부분을 현금자산 및 ETF(KRX300 등 인덱스 추종) 등에 투자
- 거래소의 지수변경 등 시장 상황 변화 시 주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을 통하여 유연하게 대응

2)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 - KRX300지수 선물 등

- KRX300 지수선물 등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KRX300 지수 일일등락률 1.5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
- 투자신탁의 주식에 대한 투자노출도를 순자산의 150% 수준으로 유지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위험노출도	투자대상자산	자산비중
위험노출도 150%	75%	KRX300 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	-
	75%	KRX300 주식 포트폴리오	70%
		ETF (KRX300 등 인덱스 추종)	5%
	-	유동성자산 (증거금포함)	25%
			순자산비중 100%

※ 위 예시 포트폴리오 상의 주식, 장내파생상품 등에의 투자비중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수익 전략

- 대형주/중소형주 비중확대 : 대형주(또는 중소형주)의 강세 국면을 포착하여 비중 조절
- 스타일 교체 : 비슷한 특성의 종목들을 그룹화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스타일군의 종목 편입
- 편입비 조절 :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따른 주식 비중 조절
- Event-driven : 기업의 이벤트 발생 시 적정가치를 분석하여 종목 매매

※그러나, 실제 편입자산 및 비중은 설정규모와 자산조달 여건 등에 의해 변동 가능하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일일등락률의 1.5 배는 기간등락률의 1.5 배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 시 사전적으로 반드시 판매직원, 집합투자업자 등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일등락률과 기간수익률과의 차이 예시

<KRX300 지수 상승국면>

KRX300지수가 100->130으로 상승함에 따라 기간수익률 30%의 1.5배를 산출할 경우 45%이나, 실제 펀드의 수익률은 47.8%로 2.8%p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날짜	KRX300지수	KRX300인덱스펀드			KRX300 1.5배 레버리지펀드			수익률차이 (B) - (A)
		일간수익률	누적수익률	누적수익률*1.5배 (A)	기준가	일간수익률	누적수익률 (B)	
0일차	100				1,000			
1일차	103	3.0%	3.0%	4.5%	1,045	4.5%	4.5%	0.00%
2일차	106	2.9%	6.0%	9.0%	1,091	4.4%	9.1%	0.07%
3일차	109	2.8%	9.0%	13.5%	1,137	4.2%	13.7%	0.20%
4일차	112	2.8%	12.0%	18.0%	1,184	4.1%	18.4%	0.39%
5일차	115	2.7%	15.0%	22.5%	1,231	4.0%	23.1%	0.65%
6일차	118	2.6%	18.0%	27.0%	1,280	3.9%	28.0%	0.97%
7일차	121	2.5%	21.0%	31.5%	1,328	3.8%	32.8%	1.35%
8일차	124	2.5%	24.0%	36.0%	1,378	3.7%	37.8%	1.79%
9일차	127	2.4%	27.0%	40.5%	1,428	3.6%	42.8%	2.29%
10일차	130	2.4%	30.0%	45.0%	1,478	3.5%	47.8%	2.85%

< KRX300 지수 하락국면>

KRX300지수가 100->70으로 하락함에 따라 기간수익률 -30%의 1.5배를 산출할 경우 -45%이나, 실제 펀드의 수익률은 -41.7%로 3.3%p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날짜	KRX300지수	KRX300인덱스펀드			KRX300 1.5배 레버리지펀드			수익률차이 (B) - (A)
		일간수익률	누적수익률	누적수익률*1.5배 (A)	기준가	일간수익률	누적수익률 (B)	
0일차	100				1,000			
1일차	97	-3.0%	-3.0%	-4.5%	955	-4.5%	-4.5%	0.00%
2일차	94	-3.1%	-6.0%	-9.0%	911	-4.6%	-8.9%	0.07%
3일차	91	-3.2%	-9.0%	-13.5%	867	-4.8%	-13.3%	0.21%
4일차	88	-3.3%	-12.0%	-18.0%	824	-4.9%	-17.6%	0.42%
5일차	85	-3.4%	-15.0%	-22.5%	782	-5.1%	-21.8%	0.71%
6일차	82	-3.5%	-18.0%	-27.0%	741	-5.3%	-25.9%	1.07%
7일차	79	-3.7%	-21.0%	-31.5%	700	-5.5%	-30.0%	1.50%
8일차	76	-3.8%	-24.0%	-36.0%	660	-5.7%	-34.0%	2.01%
9일차	73	-3.9%	-27.0%	-40.5%	621	-5.9%	-37.9%	2.61%
10일차	70	-4.1%	-30.0%	-45.0%	583	-6.2%	-41.7%	3.28%

< KRX300 지수 황보국면 >

KRX300지수가 100->100으로 변동이 없음에 따라 기간수익률 0%의 1.5배를 산출할 경우 0%이나, 실제 펀드의 수익률은 -0.9%로 0.9%p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날짜	KRX300지수	KRX300인덱스펀드			KRX300 1.5배 레버리지펀드			수익률차이 (B) - (A)
		일간수익률	누적수익률	누적수익률*1.5배 (A)	기준가	일간수익률	누적수익률 (B)	
0일차	100				1,000			
1일차	105	5.0%	5.0%	7.5%	1,075	7.5%	7.5%	0.00%
2일차	100	-4.8%	0.0%	0.0%	998	-7.1%	-0.2%	-0.18%
3일차	95	-5.0%	-5.0%	-7.5%	923	-7.5%	-7.7%	-0.17%
4일차	100	5.3%	0.0%	0.0%	996	7.9%	-0.4%	-0.38%
5일차	105	5.0%	5.0%	7.5%	1,071	7.5%	7.1%	-0.40%
6일차	100	-4.8%	0.0%	0.0%	994	-7.1%	-0.6%	-0.55%
7일차	95	-5.0%	-5.0%	-7.5%	920	-7.5%	-8.0%	-0.51%
8일차	100	5.3%	0.0%	0.0%	993	7.9%	-0.7%	-0.75%
9일차	105	5.0%	5.0%	7.5%	1,067	7.5%	6.7%	-0.81%
10일차	100	-4.8%	0.0%	0.0%	991	-7.1%	-0.9%	-0.93%

※ 상기의 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투자신탁의 보수, 거래 비용 등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투자신탁의 운용에 있어서는 상기의 예시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RX300지수 일일등락률 * 150%

KRX300 지수

한국거래소에서 2018년 02월 05일 발표한 지수로서, 305개 종목(코스피 237개 종목 + 코스닥 68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 (단, 2018년 6월 정기변경부터는 300개 종목으로 조정될 예정)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KRX300 지수의 1.5 배 수준 성과를 추종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하여 KRX300 일일등락률 * 150%를 비교지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

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 KRX300지수 구성종목 변경 또는 기타 이벤트로 KRX300지수 개별종목 비중 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KRX300지수 일일등락률의 1.5배를 효과적으로 추종할 수 있도록 일간 단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KRX300지수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성과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덱스 집합투자기구이며,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변경 후>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70% 이상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Benchmark)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주1) 이 비교지수는 2018년 10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듀레이션 3.5 +/- 0.5년)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며,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 UBS 파워증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투자전략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1) 듀레이션 전략

기본적으로 듀레이션 1.8 년 수준을 유지하되, 금리전망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듀레이션 조정을 통해 수익을 추구합니다.

*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 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 년 만기 채권의 듀레이션은 약 2.7 년입니다.)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써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는 시장 기대의 쓸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두 채권간의 금리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가 평균치를 상당폭 벗어날 때 평균치에 다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개별 종목분석에 의해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고 선물의 채권 대비 저평가,고평가를 활용하여 매매하기도 합니다.

(3) 수익률곡선 전략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수익률은 하락하고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거나 강세가 예상되는 만기구간의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Customized 매경BP채권지수 (듀레이션 3.5 +/- 0.5년)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별첨 4

<변경 전>

가. 일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u>상장주식, 파생상품</u>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레버리지 (Leverage)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레버리지(Leverage)투자로 인해 일반주식형펀드에 비해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덱스펀드에 비해 높은 베타(1.5)로 인해 인덱스(KRX300) 대비 수익률의 변동성이 또한 매우 큼니다. 상기 언급한 사유로 인해 주가하락시 펀드내 손실이 일반 인덱스펀드나 주식형펀드에 비해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p>
<p>투자전략 실행위험</p>	<p>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투자설명서 제출일 현재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투자전략으로서 투자대상자산, 투자비중 및 구성 등은 펀드 운용 시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나 거래량의 부족, 펀드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등의 이유로 1.5배 레버리지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펀드규모 또는 시장상황, 거래량등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 레버리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p>(지수)추적오차(Tracking Error) 위험</p>	<p>지수복제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과정에서의 오차, 지수선물의 roll over에 따른 오차, 지수구성종목의 변경, 빈번한 설정 및 해지, 그리고 거래에 따른 비용 등으로 인하여 추적하는 인덱스의 수익률과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이 상이한 지수추적오차(tracking error)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나 거래량의 부족, 펀드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등의 이유로 1.5배 레버리지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펀드규모 또는 시장상황, 거래량등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 레버리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p>
<p>투자원금 전부 손실 가능성</p>	<p>아주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동안 계속해서 주식이나 선물 모두 매매할 수 없어서 포지션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이 '0'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펀드의 위험노출액이 일일 순자산의 150% 수준의 조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투자원금이 '0'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p>
<p>코스닥 종목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이 추종하는 KRX300지수는 일부 코스닥종목을 편입하고 있어 시장상황 및 해당 주식의 성과에 따라 KOSPI200지수등을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에 비하여 본 투자신탁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p>
<p>파생상품투자위험</p>	<p>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p> <p>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주식-파생형] 유형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p>

	락의 일환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변경 후>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u>신용위험 및 부도위험</u>	투자적격등급(A-)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u>이자율 변동위험</u>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파생상품 투자위험</u>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u>유동성 위험</u>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별첨 5

<변경 전>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	종류 C-F	
집합투자업자보수	0.300	0.300	0.300	0.300	0.300	3개월후급
판매보수	0.500	0.250	1.000	0.500	0.030	
신탁업자보수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5	0.015	0.015	0.015	0.015	
보수합계	0.845	0.595	1.345	0.845	0.375	
기타비용 ^{주 1)}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주 2)}	0.845	0.595	1.345	0.845	0.375	-
증권거래비용 ^{주 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종류 W	종류 AG	종류 CG	종류 S	
집합투자업자보수	0.300	0.300	0.300	0.300	3개월후급
판매회사보수	0.000	0.325	0.650	0.300	
신탁업자보수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5	0.015	0.015	0.015	
보수합계	0.345	0.670	0.995	0.645	
기타비용 ^{주 1)}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주 2)}	0.345	0.670	0.995	0.645	-
증권거래비용 ^{주 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1,000 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186	370	574	1,178
종류 A-E	111	242	387	817
종류 C	138	435	762	1,734
종류 C-E	87	273	479	1,089

종류 C-F	38	121	212	483
종류 W	35	111	195	445
종류 AG	118	265	427	909
종류 CG	102	321	563	1,283
종류 S	66	208	365	831

<변경 후>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	종류 C-F	
집합투자업자보수	<u>0.080</u>	<u>0.080</u>	<u>0.080</u>	<u>0.080</u>	<u>0.080</u>	3개월후급
판매보수	<u>0.080</u>	<u>0.040</u>	<u>0.250</u>	<u>0.125</u>	<u>0.010</u>	
신탁업자보수	<u>0.005</u>	<u>0.005</u>	<u>0.005</u>	<u>0.005</u>	<u>0.005</u>	
일반사무관리보수	<u>0.001</u>	<u>0.001</u>	<u>0.001</u>	<u>0.001</u>	<u>0.001</u>	
보수합계	<u>0.166</u>	<u>0.126</u>	<u>0.336</u>	<u>0.211</u>	<u>0.096</u>	
기타비용 ^{주 1)}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주 2)}	<u>0.166</u>	<u>0.126</u>	<u>0.336</u>	<u>0.211</u>	<u>0.096</u>	-
증권거래비용 ^{주 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종류 W	종류 AG	종류 CG	종류 S	
집합투자업자보수	<u>0.080</u>	<u>0.080</u>	<u>0.080</u>	<u>0.080</u>	3개월후급
판매회사보수	<u>0.000</u>	<u>0.050</u>	<u>0.120</u>	<u>0.035</u>	
신탁업자보수	<u>0.005</u>	<u>0.005</u>	<u>0.005</u>	<u>0.005</u>	
일반사무관리보수	<u>0.001</u>	<u>0.001</u>	<u>0.001</u>	<u>0.001</u>	
보수합계	<u>0.086</u>	<u>0.136</u>	<u>0.206</u>	<u>0.121</u>	
기타비용 ^{주 1)}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주 2)}	<u>0.086</u>	<u>0.136</u>	<u>0.206</u>	<u>0.121</u>	-
증권거래비용 ^{주 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1,000 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u>47</u>	<u>83</u>	<u>124</u>	<u>243</u>
종류 A-E	<u>28</u>	<u>56</u>	<u>86</u>	<u>177</u>
종류 C	<u>34</u>	<u>109</u>	<u>190</u>	<u>433</u>
종류 C-E	<u>22</u>	<u>68</u>	<u>119</u>	<u>272</u>
종류 C-F	<u>10</u>	<u>31</u>	<u>54</u>	<u>124</u>
종류 W	<u>9</u>	<u>28</u>	<u>49</u>	<u>111</u>
종류 AG	<u>29</u>	<u>59</u>	<u>92</u>	<u>190</u>
종류 CG	<u>21</u>	<u>67</u>	<u>117</u>	<u>266</u>
종류 S	<u>12</u>	<u>39</u>	<u>69</u>	<u>156</u>